

March 10, 2023

중국 「개인정보 역외제공 표준계약 규정」 정식 공표, 2023. 6. 1.부터 시행

중국정부가 2022. 6. 30.에 공표한 「개인정보 역외제공(出境) 표준계약 규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이 2023. 2. 24. 중국 국가인터넷정보부서(이하 “인터넷정보부서”)에 의해 통과되어 「개인정보 역외제공(出境) 표준계약 규정」(이하 “「표준계약규정」”)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 6.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² 제38조는 개인정보를 역외로 제공할 수 있는 4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준계약규정」은 4가지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던 중국 국내 제공자와 역외 수령자 간에 개인정보역외제공 표준계약(이하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표준계약 양식 등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표준계약규정」의 핵심내용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개인정보의 역외제공시 표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제공할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제4조).

1. 핵심정보인프라시설운영자가 아닐 것
2.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100만명 미만일 것
3. 전년도 1. 1.부터 누적하여 역외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10만명 미만일 것
4. 전년도 1. 1.부터 누적하여 역외로 제공한 민감개인정보가 1만명 미만일 것

위 요건들은 「의견수렴안」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표준계약규정」 제4조 후단에서는 추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수량의 분할 등 수단을 취하여 안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를 표준계약의 체결방식을 통해 역외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중국 국내 개인정보처리자(제공자)의 “역외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량이 위 각항에서 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국 인터넷정보부서가 조직하는 안전평가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 단속하려는 중국 인터넷정보부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规定（征求意见稿）》，구체적인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2022.7.4.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个人信息保护法》. 2021. 11. 1.부터 시행

II. 사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기준 확정

「표준계약규정」 제5조는 「의견수렴안」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³, 중국 역내 개인정보처리자는 역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중점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 및 역외 수령자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범위, 방식 등의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
2. 역외제공 개인정보의 규모, 범위, 유형, 민감정도 및 개인정보의 역외제공이 개인정보 권리에 미치는 리스크
3. 역외 수령자가 부담하기로 확약한 의무 및 의무를 이행하는 관리 및 기술조치, 능력 등이 역외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를 역외에 제공한 후 변조, 훼손, 유출, 분실,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등의 리스크 및 개인정보의 권익유지를 위한 경로가 원활한지 여부 등
5. 역외 수령자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법규가 표준계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6. 개인정보 역외제공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기타 사항

III. 표준계약/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보고서 신고의무

「표준계약규정」 제7조, 제8조에서도 「의견수렴안」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역외 수령자와 표준계약을 체결한 후 효력발생일로부터 10 영업일 내 소재지 성(省)급 인터넷정보부서에 (i) 표준계약 및 (ii)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안」에서는, 표준계약 유효기간 내에 아래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표준계약규정」에서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한 후 표준계약을 ‘보완’하거나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국 개인정보처리자의 영향평가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1. 역외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유형, 민감정도, 방식, 저장장소 또는 역외 수령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용도,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역외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역외 수령자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법규가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권리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권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위와 같은 신고제도는 「의견수렴안」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이번 「표준계약규정」에서 그대로 유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의 역외 제공에 대해 엄격히 감독할 것이라는 중국 인터넷정보부서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3 일부 문구 수정사항은 밑줄, 굵은 글씨 부분 참고

VI. 표준계약의 주요내용

「의견수렴안」과 달리 「표준계약규정」에서는 표준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은 엄격히 「표준계약규정」 첨부 「표준계약양식(중문본)」에 따라 엄격히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중국 개인정보처리자와 역외 수령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제6조).

「표준계약」은 총 9조, 별첨1(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설명) 및 별첨2(양자가 약정한 특별 조항(있을경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역외 수령자, 개인정보주체, 개인정보, 민감개인정보, 감독관리기관,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해 정의함.
제2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 역외제공에 있어서 개인정보주체에 대해 수령자의 명칭(성명), 연락처, 처리목적/방식, 민감정보제공 필요성 관련 고지의무 등 의무를 규정함.
제3조 (역외 수령자의 의무)	약정된 개인정보 처리목적, 처리방식 및 처리대상 정보유형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의무를 규정함.
제4조 (역외 수령자 소속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법규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역외 수령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역외 현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법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보증 등에 대해 규정함.
제5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주체는 정보처리에 대해 알 권리, 결정권, 제한을 설정하거나 거부하는 권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 복제권, 정정권리, 보완권리 및 삭제권리, 개인정보처리규정에 대해 해석설명을 요구하는 권리 등을 보유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제6조 (구제)	역외 수령자가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처리 관련 문의 또는 신고를 답변하도록 수권하고, 개인정보주체가 제기한 문의 또는 신고를 적시 처리하도록 하며 연락 담당자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등 구제방법에 대해 규정함.
제7조 (계약해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역외 수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함.
제8조 (계약위반책임)	당사자들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 계약위반책임에 대해 규정함.
제9조 (기타)	계약조항 우선효력, 준거법, 통지, 분쟁해결, 계약의 해석 등에 대해 규정함.

「표준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독립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 개인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역외 수령자”는 “개인정보처리자부터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조직, 개인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역외 수령자”에는 (i) 독립적으로 처리목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 개인과 (ii) 개인정보처리자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의

“당사자”는 (1) “중국 역내 개인정보 처리자”와 “중국 역외 개인정보처리자(수령인)” 또는 (2) “중국 역내 개인정보처리자”와 “중국 역외 수탁인”의 두 가지 경우로만 체결이 가능합니다. 즉, 중국 역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국 역내 수탁인”은 표준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중국 역내 수탁인”이 다시 중국 역외의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V. 시사점

이번 정식으로 통과된 「표준계약규정」은 기존 「의견수렴안」의 대부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으로서 중국 역외(한국)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역외 수령자(한국본사 또는 한국계열사)와 「표준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표준계약규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으로서 「표준계약」 효력이 발생된 후에야 비로소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i) 사전(역외 이전하기 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ii) 사후(표준계약 효력 발생 후 10영업일 내) 표준계약/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보고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표준계약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본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에 진행되었던 개인정보 역외 이전 활동이 본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시정을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이미 중국 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 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국가데이터국 신설

중국정부는 2023. 3. 7. 국무원의 제도개혁 방안 심의에 관한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인프라 제도를 건설하고,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및 이용을 조정 및 촉진하며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계획 및 건설을 조정 및 촉진하는 책임이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 부서인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중앙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사무실(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이 담당하던 디지털 중국 건설방안 연구, 공공서비스와 사회 거버넌스 정보화 조정 추진, 스마트시티 건설 조정, 국가중요정보자원 개발이용 및 공유 조정, 산업간 부서간 정보자원의 상호연결 추진 등의 책무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담당하던 디지털경제발전 총괄추진, 국가 빅데이터전략 조직실시, 데이터 요소 인프라 제도건설 추진, 디지털 인프라배치 추진 등의 책무를 국가데이터국에 편입시켰습니다.

중국 국가데이터국은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 주도로, 정부 중심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안전 분야 관련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내지 사고대응 등과 관련하여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관련 세부규정을 꾸준히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Compliance 시스템 구축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김성욱

변호사

T 86.21.6085.2900

E sungwook.kim@bkl.co.kr

김응걸

외국변호사(중국)

T 02.3404.7594

E yingjie.jin@bkl.co.kr

구천을

외국변호사(중국)

T 02.3404.6999

E tianyi.qiu@bkl.co.kr